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준엽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2021. 2. 8.(월)

제 목

사채업자도 자본시장법위반 단독범으로 유죄선고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■ 최근(1. 28.) 서울고등법원(제9형사부, 재판장 20기 한규현)에서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ㄷ社를 인수한 사건의 자금 제공자인 사채업자 C○○에 대하여, 사채담보로 제공받은 40억 원 상당 주식의 보유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이를 매각하는 등 무자본 M&A 세력의 범행에 편승하여 단독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억 원, 부당이득 7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음

1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1) 피고인

- A○○ [63세, ㄱ조합 대표조합원, ㄱ社 각자 대표]
- B○○ [66세, ㄱ조합 업무집행조합원, ㄷ社 및 ㄱ社 각자 대표, ㄱ社 대표]
- C○○ [51세, ㄸ社 대표, 사채업자]

② 범죄사실 요지

- 피고인 A○○, B○○은 공모하여 '16. 3.경 교조합 명의로 코스닥 상장 기업인 ㄷ社를 무자본 M&A 하는 과정에서, ㄷ社 주식 인수대금 200억 원을 사채업자인 피고인 C○○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, 투자받은 돈임에도 조합의 '자기자금'으로 허위공시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[9,750원→29,200원, 299% 상승]하여 ㄷ社 경영권을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

- 사채업자인 피고인 C○○은 A○○ 등의 무자본 M&A 계획을 알면서도 사채자금 40억 원을 빌려주고 공시 없이 ㄷ社 주식을 담보(처분권 포함)로 취득하고, 주가 상승 후 이를 몰래 매각하여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

※ 사건개요도 별첨 첨부

2 주요 수사 경과

- 2017. 9. 27. 금융위원회 통보 [Fast Track]
- 2018. 4. 26. ㄷ社 등 관련사 5곳에 대한 압수수색
- 2018. 8. 2. A○○ 구속 기소

- 2018. 9. 18. B○○, C○○ 구속 기소


※ C○○ 부당이득 70억원 추징보전조치 완료

- 2019. 7. 15. 1심 선고, 2021. 1. 28. 항소심 선고

피고인	1심 선고 결과	항소심 선고결과
A○○	징역 5년, 벌금 140억원	징역 4년, 벌금 2억5천만원
B○○	징역 5년 6월, 벌금 140억원	징역 4년, 벌금 2억5천만원
C○○	징역 2년 6월, 벌금 70억원, 추징 70억원	징역 2년 6월, 벌금 35억원, 추징 70억원

3

수사결과

- 사채업자인 피고인 C○○는 무자본 M&A의 범행구조에 대해 인식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고, 주가가 상승하자 즉시 주식을 매도하여 약 20일 만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 C○○를 자본시장법위반의 ‘공범’으로 기소하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, 항소심에서 불법적 M&A에 편승한 자본시장법위반의 ‘단독범’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유죄 및 벌금 35억 원,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음
- 본건은 불법적 M&A에 가담한 사채업자를 자본시장법위반의 공범이 아닌 ‘단독범’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,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추징 보전된 재산을 통해 부당이득 70억 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임 

< 무자본 M&A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개요 >

